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업심사과장을 개방형직위에
서 제외하는 대신 국제협력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
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6. . ~ 6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취업심사과장”을 “국제협력담당관”으로 한다.

별표 1 중 “행정서기보 3” 다음에 “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”를 신설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“7”을 “5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“행정서기보 3” 다음에 “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”를 신설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“7”을 “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① (생 략)	제19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 라 대변인, 인재정보담당관, <u>취</u> <u>업심사과장</u> 및 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 글로벌교육과장은 임기 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국 <u>제협력담당관</u> ----- ----- -----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(제16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	3	3	
<u>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</u>			
<u>보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·	·	·	
·	·	·	
사무운영서기보	<u>7</u>	<u>5</u>	-2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1의2]

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(제16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보	3	3	
<u>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</u>			
<u>보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·	·	·	
·	·	·	
사무운영서기보	<u>7</u>	<u>5</u>	-2
·	·	·	
·	·	·	